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021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17년 8월 14일
-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2. 제안이유

- 양천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위 치 · 규 모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4-1 / 263.21㎡
지 원 시 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사무실, 회의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8.1.1.~2019.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청년활력 증진 사업(청년밥상, 심리치료, 청년교류프로그램 등)
 - 청년역량 강화 사업(강연, 취·창업 지원, 청년장터)
 - 무중력지대 홍보사업
- 소요예산 : 320백만원('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19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양천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양천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무중력지대 양천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위치·규모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4-1 / 263.21㎡
지원 시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사무실, 회의실 등
위 치 도	

- 본 동의안은 약 2년의 기간 동안(2018. 1. 1 ~ 2019. 12. 31) 무중력지대 양천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018. 1. 1 ~ 2019.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 업 비 : 연간 320백만원(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위·수탁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력 증진 사업(청년밥상, 심리치료, 청년교류프로그램 등) - 청년역량 강화 사업(강연, 취·창업 지원, 청년장터) - 무중력지대 홍보사업

나. 무중력지대 양천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과 무중력지대 G밸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소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서대문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보면 사업내용면에서는 청년 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크게 대상과 운영시간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공간지원 등 유사시설 비교〉

구 분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설 치 근 거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운 영	민간위탁(예정)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 성 규 모	거점(1개소)	서울시, 자치구 구별	市の 중간지원 조직
주 이 용 대 상	청년활동 그룹 ※ 국내·외 청년	청년(단체)	청년(단체), 일반시민
이 용 시 간	365일, 24시간 운영	월~금 : 10:00~22:00 토 : 10:00~16:00(대방)	월 ~일, 10:00~10:00
주 요 공 간 설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카페, 나눔부엌 등)	다목적홀, 창문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사 업 내 용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	- 청년 진로모색 및 학습경험 지원제공 - 청년 자립공존 및 공간·활동 지원 -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의제발굴 등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양천 설치·운영 계획 수립(17.2.20)이후 무중력지대(양천)설치 관련 예산을 양천구에 재배정하였고,(17.3.7), 무중력지대 양천 설계용역 계약(17.3.29) 이후 현재, 공사 발주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경과 〉

□ 추진근거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5.11. 9)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2016년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16. 8.)

□ 추진경과

- 무중력지대 사업추진 자치구 실무담당 팀장회의('17.1.4.)
 - '17무중력지대 추진계획 관련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 무중력지대 양천 설치·운영 계획 수립(청년정책담당관-2390, '17.2.20.)
- 무중력지대 양천 예산재배정(청년정책담당관-3183, '17.3.7.)
- 무중력지대 양천 설계용역 계약('17.3.29.)
- 서울시 청년공간지원추진단 회의('17.4.13.)
 - 복층에서 단층으로 변경,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안) 결정
- 무중력지대 양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자치구·청년단체 의견수렴('17.6.1.~6.7.)
 - 지역청년 특성을 반영한 청년활력프로그램, 취·창업 등 프로그램 등 제안

-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중력지대 양천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9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로 민간위탁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시된바 있음.

-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무중력지대는 2곳(무중력지대 대방, 무중력지대 G밸리)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은 무중력지대 서대문, 양천, 성북으로 지리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참고 1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현황 참조)와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중력지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넷째, 해당 시설을 구유지에 설치하는바, 양천구에서는 “조건부 반영구” 사용으로 회신(참고 2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참조)하고 있으나, 다양한

부대조건¹⁾을 첨부하고 있는바, 청년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억 2천만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향후 무중력지대 설치의 편익이나 성과물 도출 등 예산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금 액 : 320백만원('18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 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20,000	124,000	64,500	131,500

○ 산출내역(안)

구 분	산출금액	비 고
총 계	320,000	
인건비	124,000	
센터장	3,500천원*1명*12개월=42,000천원(수당포함)	기존 무중력지대 인건비 준용
매니저	3,000천원*2명*12개월=72,000천원(수당포함)	
4대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고용보험,산재보험)	10,000천원	
운영비	64,500	
공공요금 및 세제	2,000천원*12개월 = 24,000천원	기존 무중력지대 운영비 준용
우편통신비	320천원*12개월 = 3,840천원	
임차료(각종 장비 임차)	600천원*12개월 = 7,200천원	
수선유지비(시설관리)	395천원*12개월 = 4,740천원	
자산취득비(장비·물품 구입)	300천원*12개월 = 3,600천원	
용역비(청소, 주말·대체운영)	1,300천원*12개월 = 1,560천원	
회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등)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1)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양천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소모품(사무용품, 복사지 등)	160천원*12개월	= 1,920천원	
	여비(시내·외 출장)	100천원*12개월	= 1,200천원	
사업비		131,500		
	1) 청년활력 증진사업			69,600
	ㄱ. 청년밥상 운영	100천원*24회*12개월	= 28,800천원	
	ㄴ. 감성치료 프로그램 운영	200천원*12회*12개월	= 28,800천원	
	ㄷ. 공유물품 운영	100천원*12개월	= 12,000천원	
	2) 청년역량 강화사업			50,000
	ㄱ. 청년강연프로그램	500천원*2회*12개월	= 12,000천원	
	ㄴ.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500천원*4회*12개월	= 24,000천원	
	ㄷ. 청년교류프로그램	500천원*4팀*4회	= 8,000천원	
	ㄹ. 오목교 수변광장 청년장터	500천원*12회	= 6,000천원	
	3) 무중력지대 홍보			11,900
	ㄱ. 무중력지대 양천 온라인 플랫폼 조성 홍보	2,000천원*1회	= 2,000천원	
	ㄴ. 홍보(홍보물 등)	2175천원*4회	= 8,700천원	
	ㄷ. 청년 창업가, 단체 등 홍보	100천원*12회	= 1,200천원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 자료 1

청년공간 조성 · 운영 현황

(‘17.5.31일 현재)

연번	명칭	조성기관	‘17년예산 (백만원)	위치 및 규모	비고
1	무중력지대 북성	서울시	494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외 3필지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506.7㎡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후 무중력지대공간으로 운영예정	2017.11월준공 (예정)
2	무중력지대 도봉	서울시	600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 - 규모 : 건물(지상 2개층), 1,467㎡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후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예정	2017.11월준공 (예정)
3	무중력지대 서대문	서울시	600	- 소재지 : 서대문구 통일로 358-1외 1 - 규모 : 舊 안산치안센터 - 건물(지상 4개층), 133.49㎡ 신지식인산업센터 - 건물(지상 1개층), 256㎡ - 사업내용 : 건물 리모델링 후 무중력지대공간으로 운영예정	2017.10월준공 (예정)
4	무중력지대 양천	서울시	700	- 소재지 : 양천구 목동404-1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262.37㎡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후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예정	2017.10월준공 (예정)
5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시	419	- 소재지 :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168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293㎡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2015.1월 운영
6	무중력지대 대방동	서울시	405	- 소재지 : 동작구 노량진로 10 - 규모 : 건물(지상 2개층), 398.5㎡ - 사업내용 : 청년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2014.12월 운영
7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 간	서울시	800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 - 규모 : 건물(지상 4개층), 313.91㎡ - 사업내용 : 건물 리모델링 후 청년교류공간으로 운영예정	2017.10월 준공 (예정)
8	청년청	서울시	196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 규모 : 건물(지하1층, 지상 4개층), 4,295.7㎡ - 사업내용 : 청년입주단체 공간으로 운영 중	2015.12월 운영
9	미정	은평구	1,084	- 소재지 : 은평구 대조동 9-14, 31 - 규모 : 468.65㎡ - 사업내용 : 리모델링 후 은평구 청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예정	2017.11월준공 (예정)
10	청춘빨딩	금천구	164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38길 10-11(독산동) - 규모 : 건물(지상 3개층), 354.96㎡ - 사업내용 : 건물 리모델링 후 청춘빨딩 공간으로 운영 중	2016.11월 준공

연번	명칭	조성기관	'17년예산 (백만원)	위치 및 규모	비고
11	영등포구 청년1인원 창업지원 시설	영등포 구	5	- 소재지 :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 테크시티 425호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106.053m ² - 사업내용 :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실 중 하나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 운영중	2015.2월 운
12	충무청년 창업센터 (가칭)	중구	860	- 소재지 : 중구 충무로5가 8-8 - 규모 : 건물(지하 2개층), 1,256m ² - 사업내용 : 청년창업카페, 청년창업 동아리, 전시공간 등으로 운영예정	2017.11월 준공(예정)
13	성동구 청년지원 센터	성동구	54	- 소재지 : 성동구 뚝섬로1길 2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13.42m ² - 사업내용 : 청년 네트워크 확대 및 다양한 청 년활동 공간으로 운영예정	2017.7월 준공(예정)
14	청년마루 상일센터	강동구	101	- 소재지 : 강동구 상일로6길39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273m ² - 사업내용 : 코워킹 스페이스 직장인 쉼터 및 활력프로그램 운영 중	2016.12월 운
15	청년마루 성내센터	강동구	편성예산 없음	- 소재지 : 강동구 성안로 92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72m ² - 사업내용 : 코워킹, 엔젤공방·스터디 장소 등으로 운영 중	2016.10월 운
16	청년마루 성일센터	강동구	편성예산 없음	- 소재지 : 강동구 성내로 55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50m ² - 사업내용 : 코워킹 공간,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중	2017.3월 운
17	청년마루 암사센터	강동구	편성예산 없음	- 소재지 : 강동구 암사동 451-16, 1층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128m ² - 사업내용 : 창업지원 공간 중심의 창의공간 등 으로 운영예정	2017.12월 준공(예정)

※ 관악구 청년드림센터(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 '17.2.~8.)

참고자료 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양천구)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404-1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성명 서울특별시장

7월 3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조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년 7월 3일로부터 반영구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사용료 감면)에 의거 무상 사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 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 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양천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양천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주”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조건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조건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참 고 자 료 3

유사시설 설치 · 운영 비교표

시 설 명	무중력지대 G밸리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 치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12호	동작구 노량진로 10
규 모	496㎡(전용 293㎡, 공유 203㎡)	398㎡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카페, 나눔부엌, 샤워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미나실, 시청각실, 작업실, 활동지원공간, 나눔부엌 등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분야 9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관리 운영 (월~금, 08:00~22:00) (토, 08:00~17:00) - 유지보수, 시설대여 등 ② 청년활동 지원 및 지역기반조성 - 지역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 지역청년 활동기반 조성사업 ③ 청년일터 문화개선 프로젝트 - G밸리 현장기반 청년문제 발굴조사 - 일터샐터 프로젝트 - G밸리 청년대상 강연프로그램 운영 ④ 청년문화 공간운영 -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 공간이용자 커뮤니티 운영 - 무중력지대 브랜드구축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분야 9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관리 운영 (월~금, 10:00~22:00) (토, 10:00~16:00) - 유지보수, 시설대여 등 ② 지원사업 - 문화활성화 사업(노량진탐사대 등) - 교육지원(서로서로클래스 등) ③ 네트워크사업 - 자립공장(Bank of OA 등) - 커뮤니티 활성화(공감세미나 등) ④ 홍보사업 - 사업홍보 - 무중력지대 대방동 브랜딩 - 홍보운영 - 청년주간
조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조직 없음 (위탁기관 조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조직 없음 (위탁기관 조직 연계)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명 - 시설운영, 청년 네트워크구축 - 역량강화, 근로복지지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명 - 시설운영, 청년 네트워크구축 - 역량강화, 근로복지지원, 홍보
사업예산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0백만원('17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6백만원('17년도)
수용가능 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명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프로젝트 노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고리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